

2007. 1. 23.(화)

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## 심사보고서

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#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재식)

## 가. 제안사유

-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방특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,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,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신설과
  -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전략적 조직, 행정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팀제도입 등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2조 정원 총수 : 변동없음(999명)
    - 집행기관의 정원 : 982명
  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7명
  - 기관간 정원만 상계조정
    - 본청 474명, 직속기관 110명, 사업소 146명, 읍면동 252명, 의회 17명
  -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
    -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보강을 위하여 본청에 행정5급 1명이 증원조치
    - 지도직 지도관 2명(4급 1, 5급 1)을 복수직급화 일반직렬에 포함

- 연구사 일반직(복수)에서 단수직으로 분리  
(학예연구사1, 환경연구사 2)
- 기능직 자연감소인력 7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였으나 전체 정원의 변동은 없이 내용적으로 기관별, 직급별 정원이 조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- 본 조례는 의안번호 1119호 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
-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2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, 본청에 증원 승인된 행정5급 1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로부터 증원지침(충청북도 자치행정과-10441, 2006. 9. 20) 이 시달 되었음.
- 자연감소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대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[행정자치부령 제 310호] 제 8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4<개정 2003. 5. 1.>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되는 사항임.  
(기초자치 시 : 일반직 78% 이상, 기능직 · 고용직 20% 이내, 별정직 · 정무직 2% 이내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(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한 및 의결)<개정 2004. 12. 18>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하므로서 비용개념에 입각한 지방조직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.

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요지

-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많이 줄었는데 일부 복원할 용의는 있는지?  
(박성하 의원)
- 여성팀장은 몇명 정도나 되며, 본청 6급 공무원 116명 가운데 여성  
공무원이 5명인데 해당 직원들의 균형있는 보직 검토 의향은 있으신지?  
(양순경 의원)

### 나. 답변요지 (자치행정국장 김재식)

- 농업조직에 대한 전체 정원은 줄지 않았으나 검토해 보겠음
- 2대지 3명 정도 검토중이며 점진적으로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에  
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.

## 5. 소수의견

없음

## 6. 토론요지

농업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한 복지농촌 건설에  
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내의 불균형적인 인원을 재조정  
하는 것으로 본청의 지도직 5명중 3명을 줄이고 직속기관으로 3명을  
증원 배치함이 바람직함.

## 7. 심사결과

“ 수정가결 ” (6명의원 전원찬성)

## 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1.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대비표 1부.
3.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동의 서명서  
사본 1부. 끝.

2007. 1. 22(월) 11:00  
제13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

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자 치 행 정 위 원 회

##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 월 일 : 2007. 1. 22.

제 안 자 : 강현삼 위원

### 1. 수정이유

-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종 인력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배치를 통하여 소외 되어가는 농촌정책에 대한 배전의 노력과 현장위주의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코자 인력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임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지도직 총 29명 정원 중 본청에 배정된 지도사 5명 가운데 3명을 감하여 직속기관으로 증원시켜 당초 24명에서 27명으로 증원운영 코자 함

##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# ○ [별표] 정원관리 기관별, 직급별 정원표(제3조관련)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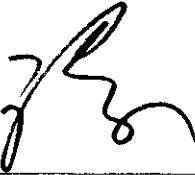
#### (개정안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분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	면	동
총 계	<u>469</u>			<u>112</u>				
-	-	-	생	략	-	-	-	-
지도직계		5		25				
지도관								
지도사		<u>5</u>		<u>24</u>				
-	-	-	생	략	-	-	-	-

#### (수정안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분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	면	동
총 계	<u>466</u>			<u>115</u>				
-	-	-	생	략	-	-	-	-
지도직계		<u>2</u>		<u>28</u>				
지도관								
지도사		<u>2</u>		<u>27</u>				
-	-	-	생	략	-	-	-	-

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
대한 수정동의 발의서명서

의원 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김봉수	<u>3.</u>	의원장
강현승		간사
최건중		
양수경		
박기식		
박성자	